

2025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 "나는 가장이다" 사업 신청 안내문

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(재)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(임차보증금 대출)를 시행합니다.

1. 사업 개요

- 가. 사업명: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 『나는 가장이다』
나. 주관/후원: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/ (재)서민주택금융재단
다. 신청 기간: 2025. 9. 1.(월) ~ 2025. 10. 2.(목) ※등기우편 접수 기준
(등기우편 발송 전 구비서류 일체를 파일로 전환하여 9. 18.(목)까지 이메일 발송해야 함)
라. 사업 내용: 1세대 당 최대 5백만 원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
※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 중인(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) 세대는 최대 3백만 원
마. 사업 대상: 만 18세(취학 시 만 22세)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한부모(조손가족 포함)
바. 대출금 상환 방법: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 상환(무이자)
사. 인센티브 지급: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대출금의 10% 인센티브 지급
아. 문의: 복지환경조성팀 T. 02-861-3011 / E. hanbumo1@seoul.go.kr

2. 사업 내용

- 가. 신청방법: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(단체)에서 대상자 추천(개인신청 불가)
나. 대출 금액: 1세대 당 최대 5백만 원(신용회복 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 원)
※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**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** 대출 가능(10만 원 단위/10만 원 미만 절사)

- 전·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(신·구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)
- 1) 기존 보증금 500만 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 원으로 상향된 경우
: 750만 원 - 500만 원 = 250만 원(⇒ 대출 가능금액: 250만 원)
 - 2) 기존 보증금 200만 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800만 원으로 상향된 경우
: 800만 원 - 200만 원 = 600만 원(⇒ 대출 가능금액 500만 원/본인 부담금액 100만 원)
 - 3) 임대주택: 보증금 5,000만 원(본인부담금 250만 원)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 8,000만 원(본인부담금 400만 원)으로 상향된 경우
: 400만 원 - 250만 원 = 150만 원(⇒ 대출 가능금액: 150만 원)
※ 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측정함

- 다. 대출 조건: 일정 기한 내에 **신규 또는 재계약 하여야 함**

구분	신규 또는 재계약일	잔금지급일
3차	2025. 4. 1. ~ 2025. 9. 30.	2025. 4. 1. ~ 2025. 9. 30.

※ 단 LH/SH공사 임대주택에 한하여, 계약일이 위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잔금지급일(입주일)로부터 1년 이내이고 상기 잔금지급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

- 라. 대출금 상환 방법: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상환
※ 300만 원 이하 매월 5만 원씩 상환 / 300만 원 초과 ~ 500만 원 매월 10만 원씩 상환

마. 인센티브 지급: 대출기간 중 연체 없이 성실상환 하는 경우, 대출금의 10% 인센티브를 구간별 지급

1차: 1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한 경우 대출금의 2% 해당액 지급(13개월 이후)
2차: 2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한 경우 대출금의 3% 해당액 지급(25개월 이후)
3차: 대출 진행 후 5년 경과 시, 연체 없이 성실상환한 경우 대출금의 5% 해당액 지급(61개월 이후)
※ 3차 인센티브 지급 시점은, 개인의 상환 일정에 관계 없이 5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됨

3. 신청대상

가. 공통 기준: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가장

1) 만 18세 이하(취학 시 만 22세 이하)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
〈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〉					(단위: 원)
가구원수	소득기준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		비고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	
2인	3,933,000	139,817	70,053	141,260	장기요양
3인	5,026,000	179,415	121,707	181,663	보험료
4인	6,098,000	219,196	154,802	222,471	미포함

※ 가구원수 :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
만 18세 이하: 2007 1. 1. 이후 출생자(취학자녀: 2003 1. 1. 이후 출생자)

2) 임차보증금 보유기준: ※ 월세는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보유기준 적용

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1억 3천 이하 / 광역시 9,000만 원 이하 / 그 밖의 지역 8,000만 원 이하

나. 대출 대상: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
- 1) (월세, 전세)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
- 2)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
- 3) 비주택 거주 (한부모가족복지시설, 여관, 쪽방, 고시원, 비닐하우스, 쉼터 등)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

다. 대출 불가 세대: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

- 1)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
- 2)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(민법상 대출 불가)
- 3) 가족(직계존비속, 형제자매)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4)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
- 5)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6) 공인중개인 없이 개인 간 계약을 진행한 경우(개인 간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)
- 7) 신용관리 대상자(2년 미만의 개인회생, 파산 등)

*단,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,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

- 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(개인별 신청일자 기준) 성실 상환중인 자 (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)
-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 원 이하인 자

※ 대출 불가 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, 향후 (재)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

8)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기대출자인 경우(재신청 불가)

4. 사업 일정

구분	일정	비고
대출 신청 서류 접수	• 2025. 9. 1.(월) ~ 10. 2.(목)	-등기우편 10. 2.(목)까지 도착분만 유효 -등기우편 발송 전 구비서류 일체를 파일로 전환하여 9. 18.(목)까지 이메일 발송 해야 함
대출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	• 2025. 11. 10.(월)	-선정자 발표 ① 본 센터 홈페이지 공지 ② 선정된 신청기관으로 공문 발송 예정
대출금 입금	• 11월 중(대출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이후)	

※세부 사업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

5. 대출금 상환 방법(원금분할상환)

- 주거래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banking 등을 통해 **자동이체 신청 후 확인서 발급하여 제출**

(원금분할상환용) 자동이체 신청	
• 출금계좌	신청인 명의 입출금통장
• 입금계좌	- 은행 명: 우리은행 - 계좌번호: 1005-904-804090 - 예금주명: 재단법인서민주택금융재단
• 주기 및 금액	매월 ()만 원 (*아래표 참조)
• 대출금 상환일자	매월 20일
• 개시일(상환 시작월)	2025년 12월
• 종료일(상환 종료월)	아래표 참조하여 작성

대출금액	월 상환액	종료일
300만 원 초과 ~ 500만 원	매월 10만 원	최장 50개월 (2025. 12. ~ 2030. 1.)
300만 원 이하	매월 5만 원	최장 60개월 (2025. 12. ~ 2030. 11.)

예시 1) 대출신청금액이 **500만 원**인 경우

- 상환기간: 2025. 12. ~ 2030. 1.

- 주기 및 금액: 월 10만 원씩 50개월 동안 상환(10만 원x50개월=500만 원)

예시 2) 대출신청금액이 **300만 원**인 경우

- 상환기간: 2025. 12. ~ 2030. 11.

- 주기 및 금액: 월 5만 원씩 60개월 동안 상환(5만 원x60개월=300만 원)

※ 3차 자동이체 기간 예시(개시일 및 종료일)

약정금액(천 원)	납부금액(원)	개월수	자동이체 개시일_종료일
1,800	50,000	36	2025. 12. ~ 2028. 11.
2,800	50,000	56	2025. 12. ~ 2030. 7.
3,500	100,000	35	2025. 12. ~ 2028. 10.
4,800	100,000	48	2025. 12. ~ 2029. 11.

6. 제출 서류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
구분	구비서류	작성요령		
필수서류	신청기관	①<서식1>신청기관 신청서	- 신청기관 신청서는 추천 대상자별 작성(필수)	
	신청자	②신분증(앞면) 사본 1부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	- 신청기관에서 신청자 본인 여부 확인 후 신분증 복사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) - 신분증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	
		③<서식2>대상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- 신청자 본인자필 작성	
		④<서식3>대출거래약정서 1부	- 밀줄 등 임의수정,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(수정 필요 시 새로 작성)	
		⑤<서식4>성실상환약약서 1부	- 주거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후 발급 가능(3p 5. 참조)	
		⑥자동이체 신청 확인서 1부	- 신청자 본인 외 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서류만 가능(표기된 서류는 수정테이프로 가리고 제출)	
		⑦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	-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전체 사본 제출(계약서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)	
		⑧임대차계약서(전체) 사본 1부 • 확정일자 받은 기존계약서(사본), 확정일자 받은 신규계약서(사본)	⑧-1. 재계약의 경우 - 보증금 증액 납입고지서 또는 재계약 신청서 추가 제출 ⑧-2. 임대주택 보증금 증액의 경우 - <서식5>임대주택 보증금 증액 예정확인서 추가 제출	
		⑨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• 무상임차 • 비주택 거주자 •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	- 무상임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대처확인서 제출 - 시설거주자는 '시설입소 확인서' 제출	
		⑩등기부등본	- 신규/재계약 거주지 건물 등기부등본(발급용) - (발급처)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및 등기소	
해당자		신청자	⑪소득 증빙 서류 (해당 분야 제출)	㉠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(50%이하) •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 ㉡ 기준 중위소득 50%초과~63%이하 •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㉢ 기준 중위소득 63%초과~100%이하 •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	심사평가 시 가점부여		• 청소년한부모 • 다자녀(3명 이상)양육 한부모 • 장애인증명서 1부	- 등본(신청자 연령 및 동거 자녀) 확인 - 가구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구 1~3등급)인 경우에 한함
	신용회복 대상자		•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,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서	- (발급처)신용회복위원회
	만 18세 ~ 22세 이하 취학자녀만 양육 중인 경우		• 재학증명서 • 휴학증명서(휴학 시)	- (발급처)해당 학교 및 정부24
	신청서 접수 이후 주소지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	• 등본	- 변동 사항 발생 이후 재제출	

- ※ 신청 서식 1~5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seoulhanbumo.or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
- ※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대출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폐기/신청인 요청시 반환 가능
- ※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인 명의로 발급하여야 함

7. 서류 제출 순서

① (신청기관 담당자) 신청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이메일 선제출

※ **서류 확인에 시일이 걸림으로 이메일 제출은 2025. 9. 18.(목) 까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**

- 이메일 제출처: hanbumo1@seoul.go.kr
- 제목 및 파일명: “2025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(신청자 이름)”
- 나머지 구비 서류는 스캔 후 한 개의 pdf 파일로 전환 후 발송
- 이메일 하단에 신청기관 담당자명과 연락처 기재



② (본 센터) 이메일 제출한 스캔자료 검토 후 등기우편 제출 가능 여부 확인

- 신청기관 직인, 원본대조(담당자 확인) 등 누락사항 검토
- 제출된 필수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검토 후 신청기관 담당자에 유선 안내



③ (신청기관 담당자) 원본 등기우편 제출

- 주소: (06904)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, 4층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
「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」 담당자 앞
- **접수일자 마감일 10. 2.(목)까지 등기우편 도착분만 유효**
※ 접수일자 마감일까지 등기우편 미도착 분은 인정되지 않음



④ (본 센터) 제출서류 접수 및 확인

8. 유의 사항 *필독*

가. 신청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

- 1) 모든 제출 서류는 **신청자 본인 외** 타인의 주민번호는 뒤 7자리를 지우고 제출 바랍니다.
(**신청자 본인 주민번호 전체 노출/신청자 본인 외 타인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필수**)
- 2) <서식 2>대상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, <서식 3>대출거래약정서는 **신청자** 자필로 작성, '본인 확인 및 자필 확인'란은 **신청기관 담당자**가 직접 확인 및 서명해야 합니다.
- 3) 제출 서류의 **기재 사항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신청서에 재작성**해야 합니다.
(수정테이프, 임의 수정 불가능) ※ 주민번호 뒤 7자리 가림 처리 시에만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
- 4) 대출금액은 신규/재계약을 통해 **상향된 보증금의 차액(십만 원 미만 절사)**까지만 가능합니다.(전·후 계약서 보증금 확인)
- 5) <서식 3>대출거래약정서의 **대출금 지급 계좌는 임대인의 계좌를 작성하되, 보증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대출 신청자 명의의 계좌** 작성 바랍니다.
- 6) 모든 제출 서류 **사본은 반드시 '원본대조(담당자 확인)'**해야 합니다.
- 7) 신청 서류 내용을 충분히 확인 후 서명하길 바랍니다

- 8) 서류 심사를 통해 대출 조건에 충족되지 않거나, 근거서류 불충분 시 심사 불가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. 서류 및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9) 탈락된 경우 대출금 원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설정은 **신청자 본인이 직접 취소**해야 합니다.

나. 임대차계약서 구비 시 유의사항

- 1) 신·구 임대차계약서는 **전체 사본**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2) **신규 계약서에는 '확정일자'가 찍혀있어야** 합니다.
- 3) **일반주택 신규계약의 경우 부동산중개인을 포함한 3자 계약만** 가능합니다.
- 4) 일반주택 신규/재계약 인 경우 **대출 실행 이후 1개월 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을 제출(신청기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)**해야 합니다.
- 5) 보증금 증액 계약의 경우, **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일자 받은 재계약서를 반드시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다. 신청기관 유의 사항

- 1) 신청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을 통해 본인여부 및 위·변조 여부를 확인 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**(원본대조필 날인 필수)**
- 2) **신청자 필수서류 오작성, 미비서류 등 검토 후** <서식 2>대상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, <서식 3>대출거래약정서 「**신청기관 확인용**」에 **서명 및 직인 날인바랍니다.**(서명 및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대출 불가능)
- 3) 신청자가 <서식 2>대상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, <서식 3>대출거래약정서 등의 서류에 내용을 **잘못 기입한 경우, 새로운 신청서에 재작성을 요청**해 주시기 바랍니다. **(임의 수정 및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)**
- 4) 신청기관에서는 신청 서류 원본을 제출하기 전 복사하여 **사본을 보관**하길 바랍니다.

9. 대출 진행 기본 원칙

심사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출을 신청한 대상자의 대출 지급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함
대출 사업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미 대출을 지급 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 (형평성 고려)
신청 기관 협력지원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출신청은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·단체에서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(개인신청 불가) • 신청기관은 추천 대상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대출 지급기관과 협력하며,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기관에서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(거주지 이전, 연락처 변경 등)가 변경될 경우, 본 센터로 전달하여 주셔야 합니다. - 추후 대출지급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, 신청기관에서는 대출지급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합니다.